



# 남해어업관리단



수신 수신자 참조  
(경유)

제목 어선중개업 행정처분(영업정지 3개월) 통지 공시송달 협조 요청

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「어선법」 제31조의2, 같은 법 제31조의4 및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 관련입니다.
3. 「어선법」 제31조의2에 따라 어선중개업의 등록요건에 미달된 어선중개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(영업정지 3개월)을 통보할 수 없어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수신기관에서는 기관별 홈페이지 내 게시판 등에 게재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공고기간 : 2024. 7. 1. ~ 15. / 14일간

나. 공고장소 : 홈페이지 게시판 등

다. 공고내용 : 붙임 참조

붙임 남해어업관리단 공고 제2024-53호(어선중개업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) 1부. 끝.

## 남해어업관리단장

수신자 동해어업관리단장(어업지도과장), 서해어업관리단장(어업지도과장)



주무관	전수영	주무관	신안수	과장	전결 2024. 6. 28.
				태종완	

협조자

시행 어업지도과-6986 (2024. 6. 28.) 접수 어업지도과-9423 (2024. 6. 28.)

우 59735 전라남도 여수시 여객선터미널길 17 여수연안여객선터미널 2층 / http://southship.mof.go.kr  
210호 남해어업관리단 여수사무실

전화번호 061-666-1420 팩스번호 061-666-1423 / tndud1939@korea.kr / 비공개(5)